

◆ 특집 ◆

수출보험 지상강좌

《단기수출보험》

■ 대금미회수 위험이 높은 지역과 거래할 때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하면 안전

수출할 때 이용하는 보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상 수출상품이 운송도중 파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에 대비해서는 해상보험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을 이용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수출업체들은 해상보험은 필수적으로 들면서 수출보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수출자 입장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바로 수출보험이다. 수출해서 10%의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볼 때 열변동안 수출을 잘하다가도 한번 대금을 못 받는다면 혀장사한 셈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 A업체는 중국수입자와 신용장 방식으로 2년간 사고없이 거래하여 중국수입자를 신뢰하던 차에 중국수입자가 무신용거래를 요청하자 A업체는 아무런 의심없이 미화 15만불 상당의 인터폰을 선적하였다. 그러나 만기가 지나도록 수입자는 판매부진을 이유로 결제하지 않고 있어 현재 A업체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 A업체가 단기수출보험만 부보하였어도 수출대금의 95%인 미화 142,500불은 회수하였을 것이다.

▶ 누가 보험에 가입하는가? = 보험계약자는 수출자이다. 기업규모에 관계없으며 개인기업이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 어떤 수출거래가 보험의 대상인가? = 단기수출보험에 들 수 있는 수출거래는 2년이내의 결제기간을 가진 일반수출거래, 위탁가공무역거래, 재판매거래, 중계무역거래 등이다.

▶ 이용하는데 제약은 없는가? = 공사에서는 수출자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 적황색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불량한 경우, 수입자와 상사분쟁중인 경우, 인수 불가능 국가로 분류된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인수가 제한된다.

▶ 위험한 거래만 골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보험계약 방식에는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이 있다. 개별보험은 거래건별로 보험가입여부를 수출자가 판단하여 드는 것이고 포괄보험은 일정 기간동안 보험부보대상이 되는 모든 수출거래를 보험에 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거래나 위험이 높은 국가의 신용장거래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보험을 붙일 수 있는 개별보험이 유리하다.

▶ 수출금액의 얼마를 보험에 붙일 수 있는가?=공사는 수입자별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금액(인수한도라 함)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보험을 인수하여 수출금액의 95%(중계무역의 경우 80%)까지 보험부보가 가능하다. 국가 또는 거래형태에 따라 보험에 붙일 수 있는 비율(부보율이라 함)이 조정될 수 있다.

▶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가?=보험료는 일괄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선적시기, 대금지급조건, 수입국 및 수입자 등급, 대금지급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다.

모든 중소기업체는 15%의 할인율이 적용되

며, 정부 또는 수출유관기관이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10% 할인된다.

참고로 일립불 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보험요율이 0.06%이다.

▶ 보험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수입자와의 거래를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수출통지만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부보금액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인수한도가 살아나는 회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수출자): 수입자 신용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수출계약서 없이도 수입자 신용조사가 가능하므로 수입자 상호명, 주소, 대표자명을 아는 경우 곧바로 수입자 신용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 보험청약 및 인수한도 신청(수출자)

다. 보험증권 교부(공사)

라. 수출통지 및 보험료 납부(수출자): 선적후 10일내로 수출통지한 후 다음달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보험관계 성립

▶ 언제 얼마만큼 보상받는가?=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만기가 지나도록 수입자가 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로부터 1월내에 사고발생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고발생통지후 1개월후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일로부터 2개

월내로 수출금액의 95%를 보상한다. 다만, 수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수출보험은 특수보험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므로 수출보험을 처음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적합한 보험종목 선정 및 이용절차 숙지를 위하여 수출보험공사와 사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락처 : 수출보험공사 마케팅팀

02-399-6787, 6789

《수출신용보증》

■ 무역금융 및 선적서류 매입시 담보걱정 해소

현재 시중자금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규모도 영세하고 이렇다할 담보도 없는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수출자금을 쓰기란 쉽지 않다. 특히 수출실적이 없는 신설업체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담보가 전혀없는 수출업체라 하더라도 신용장만 있으면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수출신용보증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금융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수출업체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지난 '98년초 설립된 소규모 원단 수출업체인 C사는 수출주문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을 가공, 집하하기 위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출금융조달을 위해 거래은행을 접촉하였더니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와 상담하여보라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라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였다. 이 후 C사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선)을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담보

로 제고하고 있다.

또한 선적후 네고자금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발급받아 은행에 별도의 담보 제출없이 선적시마다 곧바로 네고할 수 있게 되므로써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출신용보증제도란?**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현재 선적전 신용보증과 선적후 신용보증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선

적전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이 수출계약시 또는 신용장을 확보하였으나 담보가 부족하여 수출 상품의 제작,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신용 하나만을 담보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은행은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선적후 신용보증은 수출상품을 선적한 후 담보가 부족하여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이 선적서류를 원활히 네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어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나?=원래 수출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전용 수출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대기업에도 문호가 개방되었다. 수출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 담보는 필요없으나 부실자료를 제출한 기업, 금융권에서 적황색거래처로 지정되었거나 수출보험공사에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업체등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수출신용보증 대상 대출에는 어떤 것이 있나?=선적전 신용보증대상 대출에는 무역금

융, 수출입은행의 제작 금융(자본재 수출 중소기업대출 포함), 무역어음(30대 계열대기업) 등이 있으며 대출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된다.

선적후 신용보증의 대상은 결제기간 2년이 하 거래로서 국내에서 생산, 가공 집하된 물품 또는 해외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 및 수출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이 수출자에게 일으킨 신용보증부대출이 해당된다.

▶ 얼마만큼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나?=선적 전 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는 중소기업 30억원, 대기업은 50억원이나 보증한도는 수출자 신용도, 수출이행능력, 제무상태, 은행거래 관계, 경영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편 선적후 신용보증은 수입자별로 보증한도를 각각 부여하고 보증한도는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도, 수입국 신용도, 결제실적, 수출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 보증료는 얼마나 되는가?=선적전 신용보증은 수출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간 0.4%~1.4%로 차등 적용되며, 신규업체로 등급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1.6%이다.

선적후 신용보증은 단기수출보험과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단기수출보험료율에 0.05%~0.38%(기간에 따라 높아지며 1년 초과시 매개월마다 0.03% 가산)의 보증료를 더하게 된다.

▶ 보험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선적전 신용보증은 보증청약 및 보증약정체결, 보증료납부, 보증서 발급의 형태로 진행되고 보증약정체결시 채무자 대표와 관련인 1인(법인인 경우 과점주주, 개인기업인 경우 배우자)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선적후 신용보증은 단기수출보험과 거의 동

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선적전 신용보증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대표와 관련인 1인이 보증약정서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 마케팅팀(02-399-6786, 6789)으로 연락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시장개척보험》

■ 비용 부담없이 전시회 박람회 참가 가능, 수출증가 미미시 시장개척비용의 95% 보상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K사는 수출증대를 목표로 '98년 봄에 홍콩에서 개최된 전자박람회에 9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참가하였으나 막상 전시회에서는 바이어 접촉 및 수출계약의 성사가 여의치 않아 박람회 참가 비용만 고스란히 날려 버렸다. 그 후 K사는 해외전시회나 박람회는 비용문제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99년초 수출보험공사 마케팅팀의 방문을 받고 여러 가지 수출보험제도를 소개받던중 시장개척보험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K사는 해외신시장 개척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시장개척보험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는 3~4개가 넘는 고정 바이어를 확보하게 되었다.

▶ 시장개척보험제도란?=중소기업이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시장개척활동(무역전

시회 참가, 해외공동판매장 또는 직매장 설치)을 전개한 후 일정기간동안 시장개척활동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수출증대 효과가 적어 시장개척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어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나?=국내상표가 부착된 물품으로 시장개척활동에 참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만이 이용 가능하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시장개척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시장개척활동에는 △수출유관기관 업종단체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알선,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 △한국무역협회의 시장개척기금융자대상사업 중 해외전시회 참가사업, 해외공동판매장 설치사업, 해외직매장 개설사업 △KOTRA가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예 : 한국상품공장 직매장사업) △은행이 취급하는 해외투자자금 또는 중소기업창업, 진흥기금을 활용한 해외직매장 또는 해외공동판매장의 설치운영 등이 있다.

▶ 시장개척활동에 들어간 비용 전부를 보험에 들 수 있나?=공사가 인정하는 시장개척비용은 △전시장의 임차료, 설치비, 관리비(단 임차기간 만료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전시품의 수송운임, 운송보험료, 포장비 △왕복항공운임(2인내, 2등석) △체재비(일당 미화 200달러 이내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전시품설명서 인쇄비, 전시장 관련 신문광고료, 견본품 제작비 등이다.

▶ 수출물품은 외국에서 만든 물품이라도 상관없나?=시장개척활동과 관련하여 수출증가로 인정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 가공, 집하되거나 해외에서 위탁가공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물품이다.

▶ 시장개척비용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시장개척보험은 시장개척활동 비용의 95%까지 보험에 부여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1.5%이다. 즉, 1천만원의 시장개척비용

이 들고 부보율이 90%인 경우 보험료는 13만5천원이다.

▶ 보험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박람회, 전시회등의 시장개척활동 참가 2주전에 시장개척활동 참가계획서 및 예상비용내역서를 첨부하여 보험을 청약한다. 이후 시장개척활동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시장개척비용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험증권이 발급되고 수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시장개척활동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수출증가 실적이 미미하여 시장개척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시장개척비용의 95%를 보상한다. 예를 들면 A업체가 1천만원을 들여 미국 전자전시회에 참가하였으나 시장개척활동 종료후 6개월간 5천만원을 수출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A업체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4백7십5만원이다.

<개산과정>

- △ 수출증가로 회수한 시장개척비용 : 5백만 원=시장개척활동으로 증가된 수출금액(5천만원) × 수출이익률(10%)
- △ 보상금액 : 4백7십5만원=[시장개척비용 (1천만원)-회수비용(5백만원)] × 95%

시장개척보험에 대한 기타 사항은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사업본부 마케팅팀(02-399-6787, 6789)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